

『2025년 대전 중소·벤처기업인의 날』

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

대전 벤처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우수 중소·벤처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『2025 대전 중소·벤처기업인의 날』을 개최함에 따라, 회원기업에서는 포상 후보자를 추천 바랍니다.

2025년 10월 16일
이노폴리스벤처협회장

1. 개요

□ 추진배경

- 우리 지역 우수 중소·벤처기업에 기업 역량강화 및 지속발전을 도모하고자, 『2025 대전 중소·벤처기업인의 날』 행사를 개최하고, 관내 중소·벤처 기업인을 대상으로 표창 및 감사패를 수상함

<포상 수여 일정 >

- 행사명 : 2025년 대전 중소·벤처기업인의 날
- 일 시 : 2025년 12월 23일(화), 17:00 예정
- 장 소 : 골프존 조이마루 1층 챔피언스홀 (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40)

□ 포상구분

구분	유공 구분	포상내용
중소벤처기업부	벤처 활성화 유공	표창 2인

2. 자격 및 추천제한

□ 수공기간

-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관내 기업 대표자

<예외> 추가수공기간 적용

-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(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)

□ 재포상 금지기간

-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,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으며,
- 일정기간이라 함은 표창의 경우, 과거 수여일로부터 금회 추천일 까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

* 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 후보자 인적사항(주민등록번호 등)을 입력하여 과거의 포상이력 확인 가능

□ 포상 제한

-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표창(대통령 표창, 국무총리 표창)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,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□ 추천 제한

- 별첨의 추천제한의 기준 참조

3. 절차 및 일정 [변경될 수 있음]

①	②	③	④
공적조서 접수	IVA 심사위원회 개최	중소벤처기업부 심사	수여행사
10.24(금) 17시까지	10월말 예정	일정미정	12.23(월) 예정

4. 공적조서 제출 방법

공적조서 작성 및 제출

- 제출기한 : 2025년 10월 24일(금) 17:00까지
- 제출처 : young@diva.or.kr / 042-368-9720
- 제출서류 : 공적조서 양식 활용 작성, 공적내용의 증빙내용 파일을
취합하여 ZIP파일 형태로 묶음 제출

5. 관련문의

(사)이노폴리스벤처협회

- 신혁준 실장 042-867-9691
- 조지영 과장 042-368-9720

[별첨] 추천제한의 기준

- 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 - 2) 형사처분
 - 가)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나)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다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라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마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바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사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- 아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- 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 - 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 - 3)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 - 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 - ※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
 - 4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 - 가)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 - 나) '임원'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 - ※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 - *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- *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- 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 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 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5)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-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다)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6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 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- 가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- 나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7)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- *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<https://www.share.go.kr>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- 8) 사회적 물의 등 유발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※ 정부포상 운영지침,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등에 따름